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2012. 8. 9.

국민건강보험



I

추진배경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III

개선방안

1. 기본원칙 및 방향
2.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3. 모의시험 결과
4. 기대효과



I . 추진배경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미흡

- 보험료 부과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이 적은 자에 비하여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추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에 근거하여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임
- 그러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사회연대성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부과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으로 재정을 사용하는데,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상이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I . 추진배경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미흡

-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등 국민적 수용성이 낮음

— '11년 보험료 관련 민원 및 자격변동 건수는 1억 2,199만건



I . 추진배경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다양화 및 부과기반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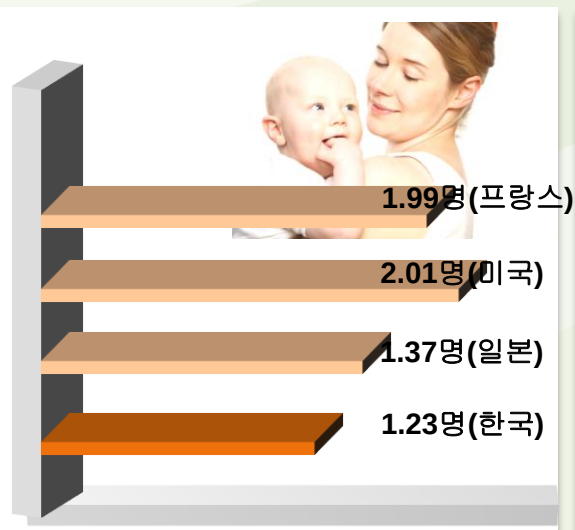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약 13%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 재정 전망 : **2020년**에는 현재('11) 보험료(32.9조원)의 2배 이상 증가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2~86조원 (GDP의 4.53~5.39%)	54~65조원 (GDP의 3.42~4.10%)	79~93조원 (GDP의 4.68~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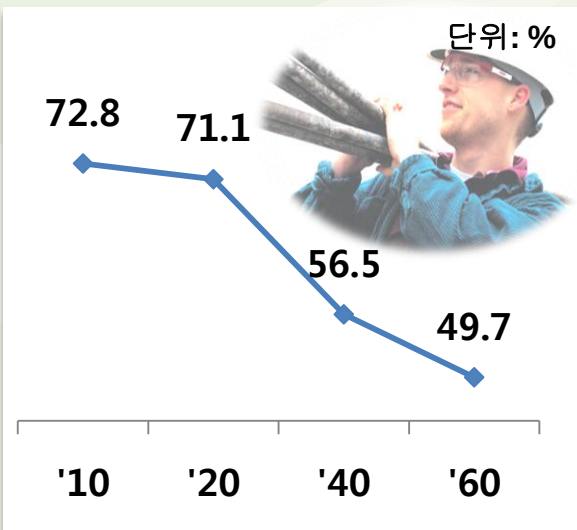
주)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연구, 2011년

I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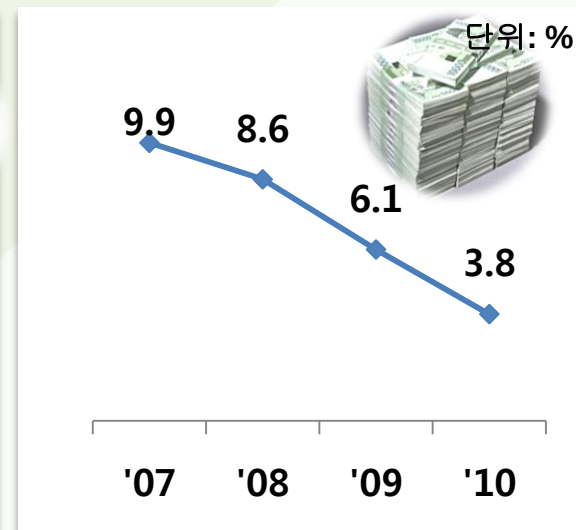
-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 둔화 및 저성장 경제구조에 따라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데, 써야 할 계층은 늘어나는 상황임



출산율('10년)



생산 가능 인구 비율



부과기반 증가율

자료: 보건 의료 미래기획단, 2011년

- 특히,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가중될 것임**
 - **현재 보험료수입의 79%를 근로소득에 부과 (이 중 50%는 기업주 부담)**

▶ OECD 연구결과, 사회보험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은 정규고용 8 ~ 10%, 전체고용 5 ~ 6% 감소시킴('09)



▶ A study of OECD countries estimates that relying on social insurance payments reduces formal employment by 8-10% and total employment by 5% to 6%(Wagstaff, 2009a)

group for each elderly person (Figure 4.8). That figure is projected to fall to 1.3 by 2050, boosting the burden of social insurance payments and discouraging employment. A study of OECD countries estimates that relying on social insurance payments reduces formal employment by 8-10% and total employment by 5% to 6% (Wagstaff, 2009a).⁴³ Shifting to tax financing may thus accelerate the shift to formal employment.⁴⁴

The composition of taxes is also important for growth. There is empirical evidence that indirect taxes²⁵ have a less negative impact on labour than direct taxes, notably income tax and social insurance payments (OECD, 2008).²⁶ The burden on labour can be measured by the "tax wedge",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labour costs and the take-home pay of workers as a share of labour costs. The tax wedge in Korea is currently one of the lowest in the OECD area, reflecting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of its safety net (Figure 4.12) and the importance attached to limiting the burden of taxes and social charges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e low tax wedge is thus a factor encouraging labour input in Korea, which is the highest in the OECD area relative to the population (Figure 1.4).

I . 추진배경

 따라서, 현재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따라 향후에 늘어나는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고, 보장성 확대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 근로소득외 모든 소득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하며,
- 소비수준은 간접적으로 소득수준을 나타내므로, 소비(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부과체계) 직장은 근로소득(보수월액), 지역은 종합소득(500만원이하 세대는 세대원 수, 연령 등을 감안한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 하여 부과

가입자별 보험료 부과체계

구 분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부과기준 (요소)	- 근로소득(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① 초과세대 : 소득 ⊕ 재산 ⊕ 자동차 ② 이하세대 : 재산 ⊕ 자동차 ⊕ 평가소득 *평가소득 = 성·연령, 재산, 자동차 점수
산정방식	보수월액 × 정률(5.8%)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0.0원)
보험료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있음(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보험료 미부과)	없음 (모든 가족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 '00년 통합 당시의 제도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II. 현황 및 문제점

(가입자 현황)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49,299천명 ('11.12월)

- 직장 : 33,257천명(가입자 13,397천명), 증가 추세 ('00년 22,404천명 대비 48.4% ↑)
- 지역 : 16,043천명, 감소 추세 ('00년 23,492천명 대비 31.7% ↓)

(피부양자 현황) 보험료 부담이 없는 피부양자 수는 19,860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건강보험가입자의 40%)

연도별 피부양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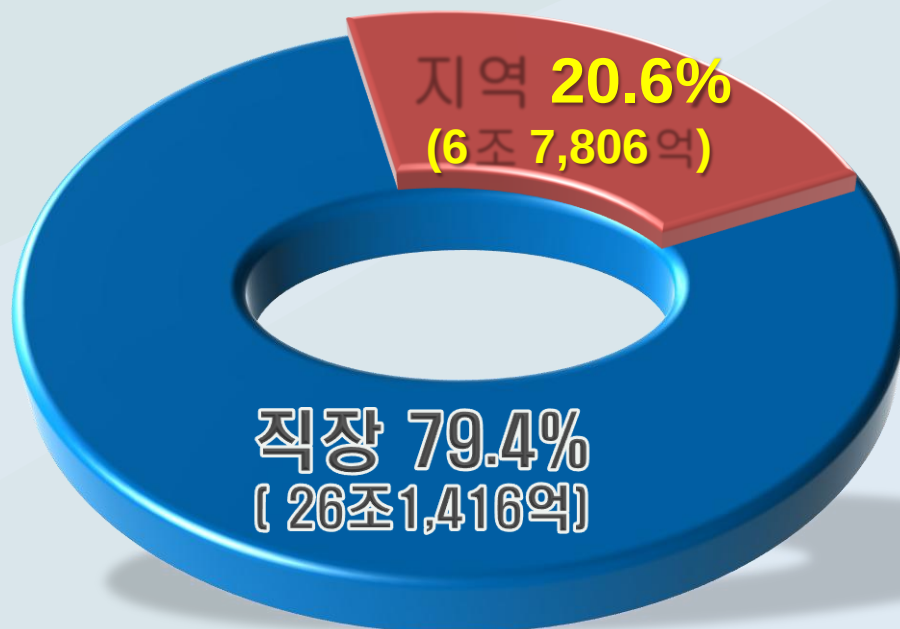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피부양자 (천명)	18,250	18,800	19,267	19,620	19,860
부양률(명)	1.63	1.62	1.59	1.54	1.48

II. 현황 및 문제점

**(보험료 부과현황) 총 32조 9,221억('11년)으로 ,
직장 26조 1,416억(79.4%), 지역 6조 7,806억(20.6%)**

2011년 보험료 부과현황

단위 : 억원



**전체
32조 9,221억**

II. 현황 및 문제점

2. 문제점

부과체계 3원화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 문제 및 민원 과다발생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지역가입자는 다시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3원화에 의한 보험료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2012.9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부과 시 4원화 체제)함에 따라,
 - 실직, 은퇴, 취업 등으로 자격변동 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부담의 불형평성 및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킴

- '11년 보험료 관련 민원 및 자격변동 건수 : 1억 2,199만건
 - 방문 및 유선민원 : '11년 총 7,760만건 중 보험료관련 민원은 82.0%인 6,363만건 임
 - 자격(직장,지역,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관련 서류 민원 : 5,836만건
 - ※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2.5건 제기, 전체직원 1인당 1일 민원처리건 : 37.5건
- '08~ '11년까지 자격변동(보험료 고지 단위) 세대는 977만세대로 전체 21,161천세대의 46.2%가 자격변동됨

II. 현황 및 문제점

- ‘11년도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 전환** 시 보험료(사용자부담금 포함)는 78.6%의 세대는 인하(직장 평균 117,084원 → 지역 평균 44,277원, 62.2% ↓)되고, **21.4%의 세대는 인상(직장 평균 65,488원 → 지역 평균 120,023원, 83.2% ↑)됨**
- **가입자부담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총 전환세대 중 46.3%의 세대는 보험료가 증가함(직장 평균 43,256원 → 지역 평균 94,534원, 118.5% ↑)

(단위: 천 세대, 원, %)

계			보험료 감소세대 (가입자)				보험료 증가세대 (가입자)			
세대수	직장평균 보험료	지역평균 보험료	세대수	감소율 ↓	직장평균 보험료	지역평균 보험료	세대수	증가율 ↑	직장평균 보험료	지역평균 보험료
1,243	106,019	60,449	977	78.6	117,084	44,277	266	21.4	65,488	120,023

주) 1. 직역간 변동되어 보험료가 고지된 건수만 산정함
2. 사용자부담 포함 기준

직장부과체계의 문제

- 근로소득(보수월액)에만 부과함에 따른 불형평성
 -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가입자와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불형평성

▶ **사례 -** A(60세, 남)는 임대소득으로 5,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월보수 150만원으로 보험료 87,000원(본인부담기준: 43,500원)을 납부하고 있음
→ 반면, 같은 회사 동료인 B씨(56세)는 소득으로는 월보수 150만원 밖에 없으나, 보험료는 A와 동일하게 87,000원(본인부담기준: 43,500원)을 납부하고 있어, 상대적 불형평성을 느끼고 있음

※ 직장가입자 중 종합소득 보유자는 1,340만명 중 176만명(13.1%)

II. 현황 및 문제점

지역부과체계의 문제

- 소득 500만원 기준 부과체계 상이 ... 이원화
 - 동일한 지역가입자임에도 소득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 특히,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성·연령에 따라 소득을 평가함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가구원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불형평성이 있으며,
 -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경계선상에 있는 세대의 보험료 변동폭이 크게 발생

- **사례 - 이○○**는 2011.11월 신규부과자료 연계시, 전년도보다 사업소득이 500만원에서 502만원으로 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보험료는 27,290원에서 62,850원으로 2.3배 증가

II. 현황 및 문제점

● 재산보험료 부담비중 과다

- 실제 재산 가치는 변동이 없으나, 재산 과표가 지속적으로 증가(재산과표 현실화 정책 포함)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 고조
- ✓ 주택과표 ('05) 50% → ('10)60%, 건물·토지과표 ('05) 50% → ('11)70%
- ✓ 재산보험료 비중 : 설계 당시('98년) 27% → 40%('11년)로 13%p 증가

▶ **사례** - 서울에 거주하는 56세 이○○은 배우자(50세)와 자녀 2명, 아파트 1채 (과표 : 3억원)과 자동차 1800cc(3년, 세액28만원)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실직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데, 월 보험료로 189,050원 납부

II.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보험료 부담비중 과다

- 자동차는 과거와 달리 생활필수품에 해당되어 보험료 부과요소로 적절하지 않다는 민원 제기
- 500만원 이하 세대에서 10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도 보험료가 크게 증가

▶ 사례) 1995년도식 2500cc 승용차 1대 구매시 자동차등급점수 62점, 생활수준등 자동차 구간점수 122점이 각각 증가하여 총184점이 차량으로 인해 증가되어 보험료 31,280원 인상됨

II. 현황 및 문제점

- 보험료 산정의 복잡성

-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남성 또는 여성에 따라 점수가 다르고, 또한 세대원의 연령에 따라 부과점수를 달리 적용하여 계산하며,
- 재산과 자동차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평가소득) 점수에도 반영하며, 또다시 별도의 점수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등 보험료 부과요소가 다양하고 모호하여,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함
- 따라서, 보험료 부과내역에 대하여 민원 설득이 어려움

II. 현황 및 문제점

- 500만원 이하세대 재산·자동차 이중부과
 -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한 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평가소득) 산정 시
에도 재산·자동차를 다시 반영함에 따른 중복부과 논란

구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			
500만원 이하	☐	☒	☒	☐		☒	☒
500만원 초과	☐	☐	☐	☐	☐	☐	☐

직장피부양자제도의 문제

- **지역가입자와의 불형평성**

-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불형평성 발생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논란**

- 현행,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거나,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재산과표 9억원(형제자매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
-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보유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음에 따른 불형평성 논란

Ⅲ. 개선방안

1. 기본원칙 및 방향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

- 가입자 모두에게 단일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따라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함
- 소득이 있는 곳에 비례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사회보험의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충실

사회연대성 강화

- 직장·지역가입자 구분 및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여 자격을 통합 관리하고, 의료 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에 포함시켜 사회연대성을 향상시킴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자격 구분 불필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다양화 및 부과기반 확대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외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고,
- 소비(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등)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수월액’ 과 ‘국가(국세청)에서 정한 소득’ 으로 구성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

- 다만,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함

소비수준은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확보

(OECD의 권고, 2010년)

- 전 국민의 기초보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Ⅲ. 부과체계의 문제점

2.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소득 중심의 단일화 부과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선 방안
개요	▶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적용 상이	▶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
부과 기준 (요소)	▶ 직장가입자 : 보수(근로소득) ✓ 개인대표자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 지역가입자 : · 500만원 초과 : 소득, 재산, 자동차 · 500만원 이하 :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소득 : 사업(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 피부양자 : 보험료 미부과 ▶ 의료급여 대상자 : 국가 별도 관리	▶ 소득 및 소비에 부과 (모든 가입자 동일) ✓ 소득 : 보수(근로소득), 사업(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 소비 :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원 확보 ※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됨('08년)

Ⅲ.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방안
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개인별 산정, 사업장 단위 합산 고지 ▶ 지역가입자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0원) ✓ 세대합산 산정, 세대단위 고지	▶ 보험료 = 소득보험료 + 소비기준 건강보험 자원 ▶ 소득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외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소비기준 건강보험자원 :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의 과세표준의 일정률을 건강 보험재원으로 조달 ▶ 보수월액 및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개인 단위로 산정

Ⅲ.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방안
소득 적용 기준	➡ 직장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시행령, 규칙, 고시 등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 보수월액 결정 -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전년도 확정 보수월액을 적용한 후, - 다음연도에 확정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당해 사업장 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으로 함	➡ 보수월액 ✓ 현행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으로 정한 금액으로 함 ✓ 보수월액 결정 : 매월 지급받는 보수로 하고,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하여 보수월액을 확정하도록 함 →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가산금 부과 및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폐지하고 수시(퇴직) 정산토록 함

Ⅲ.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방안
소득 적용 기준	▶ 지역 : 소득 ✓ 국세청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으로,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으로 하고, → 이자소득, 배당소득, 보수외 근로소득은 비과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 단,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 체국 연금)소득 적용	▶ 보수외 소득 ✓ 국가(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소득 으로 하되,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으 로 하고, → 이자소득, 배당소득, 보수외 근로소득은 비과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 연금소득은 현행과 동일하게 5대 공적연 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소득 적용

Ⅲ.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방안
소득 적용 기준	✓ 보험료 부과시 평가율 : 100%, 단,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 20%	✓ 보수외 소득월액 결정 : 사업(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상속· 증여소득 등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12로 나눈 금액 ✓ <u>소득 종류별 평가 :</u> <u>모든 소득을 100%로 함</u>

Ⅲ.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방안
보험 료율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 2012년 보험료율 : 5.8%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12년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1점당 170원	➡ 보험료율 : ✓ 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에 동일하게 적용 ※ 단,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은 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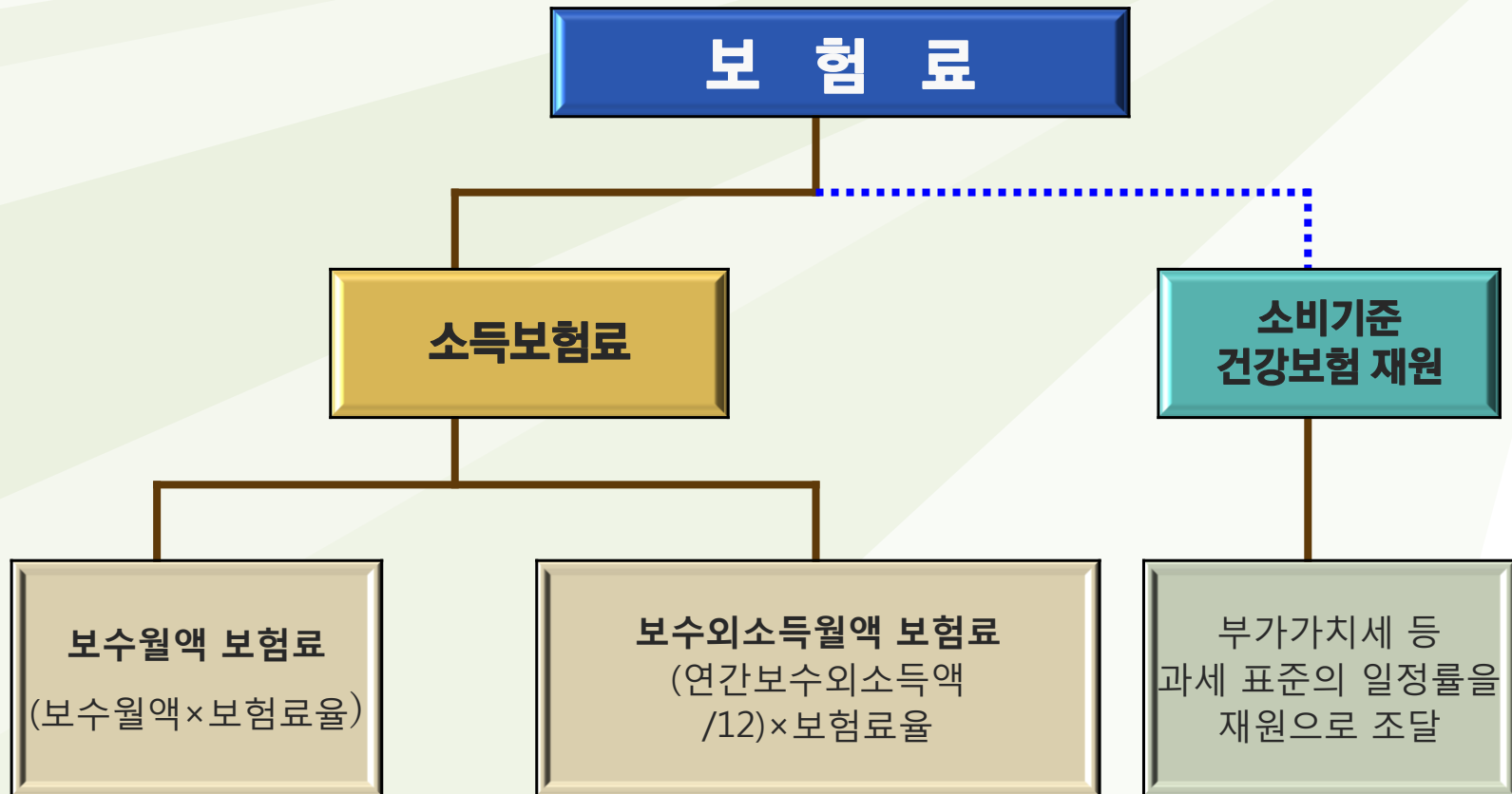
Ⅲ.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방안
보험료 부담	➡ 직장가입자 ✓ 사용자 50% 부담 ✓ 가입자 50% 부담 ✓ 사립학교교직원은 사용자가 30%, 정부가 20%, 가입자가 50%를 부담 ➡ 지역가입자 ✓ 가입자 전액 부담	➡ 보수월액 보험료 ✓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50% 부담 ✓ 사립학교교직원은 사용자가 30%, 정부가 20%, 가입자가 50%를 부담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 가입자가 전액 부담

Ⅲ.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방안
보험료 납부 의무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사용자가 납부하며,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대하여 납부 ▶ 지역가입자 보험료 ✓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 보수월액 보험료 ✓ 사용자가 납부하며,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대하여 납부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일정조건을 갖춘 미성년자 제외) ▶ 소비기준 건강보험 자원 ✓ 소비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서 정한) 납세 의무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모형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 방안’ 세부 내용

1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 보험료 부담능력은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납부능력과 부담능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고,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가중됨 (OECD 권고, 2010)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진수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2010)

2 양도·상속·증여소득에 보험료 부과

- 양도소득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 으로 자본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얻은 보유허익이고,
 - 재산보유 수준을 보험료 부담능력으로 평가하는 일반정서를 수용할 수 있고,
 - 재산 등의 양도로 개인이 얻는 실현된 소득인 양도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원칙에 충실한 것이며,
 - 동시에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적절한 요소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갑 등,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형평부과체계 연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방안,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2010)

Ⅲ. 개선방안

- 상속·증여소득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얻은 소득” 으로,
 - 개인이 얻는 소득이므로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원칙에 부합하여 부과요소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2010)

외국의 사례

- ▶ 일본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양도소득에 보험료 부과
- ▶ 프랑스의 경우 유산(상속, 증여) 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일반사회보장 분담금(CSG) 부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



3 보수월액과 보수외 소득의 적용

- 보수월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기전 소득, 보수외소득(사업,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용
- 부담능력을 판단할 때, 보수월액은 필요경비 제외 이전의 소득으로 하고, 종합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전문가의 일반적인 견해 임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기장 등 적정한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법규정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와는 차이가 있음
- 총수입 기준으로할 경우, 사업소득은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대,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부담(담세)능력을 왜곡하여 국민적 수용성이 없고,
 - 보수월액을 종합소득과 같이 필요경비적 성격의 금액을 공제할 경우, 현행 보험재정의 약 25%~32%가 감소됨

Ⅲ. 개선방안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범위의 논란은 근본적으로 조세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조세제도의 발전에 따라 보완될 전망이다
- 외국의 경우도 보험료 부과 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이고, 사업소득 등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용하고 있음

외국의 사례

- ▶ 독일, 일본, 대만 등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이며, 사업소득 등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보험료 부과



4 재산을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

- 재산의 보유는 **보험료 부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등,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2011)
-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에 보험료 부과**
 - 재산을 부과요소에서 제외하여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재산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 재산은 저장(貯量, Stock) 개념으로, 매매하여 유량(流量, Flow)개념의 화폐소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보험료 부과요소로 적절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음
-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 **재산을 보험료 부과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음**

외국의 사례

- ▶ 프랑스, 독일, 대만 등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외국의 경우 재산(자동차 포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음.
- ▶ 단, 일본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나, 일부조합에서만 부과하고 있고, 부과 규모도 10% 이내이며, 점차 줄여 나가는 추세임



- 또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 재산은 많으나 소득이 없는 세대 등 특별관리방안 강구
 - ⇒ 법에 특별 예외규정을 두어 가입자 대표 등이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 마련 또는 현행 소득축소탈루제를 강화하여 국세청과 연계 하는 방안 등

5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 조달

- 소비는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원을 확보** (OECD 권고, 2011), 전국민의 기초보험료적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소비는 실질소득(Real Income)을 나타내는 가장 타당한 수단으로, 소비는 속일 수 없고, 소비세를 납부하는 소비행위를 통해서 가입자들은 진실된 소득을 현시(Reveal)한다고 간주할 수 있음
-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계층은 줄어드는데, 써야 할 계층은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 특히, 근로소득 중심의 재원조달은 고용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Ⅲ. 개선방안

- 따라서,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기준으로 건강보험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타당함

외국의 사례

- ▶ OECD 권고(2011년) : 소득파악이 불충분하여 소비에 대해 부과
- ▶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 소비세(부가가치세 등)로 건강보험 재원 조달**
 - **일본**의 경우 현재 소비세(5%)로 노인의료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
→ '14.4월에 8%, '15.10월에 10%로 인상하여 연금, 의료보험, 장기요양, 출산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사용하는 개혁안 추진
 - **벨기에('09)** : 보험료 63%, 국고지원금 10.4%, 부가가치세 및 담배세 13.7%, 기타 9.6%
 - **프랑스('08)** : 보험료 48.0%, 일반사회보장분담금 36.0%, 목적세 11.0%, 기타 5%

※ 부가가치세율 : 한국 10%, OECD 평균 18%

6 무소득자에게 보험료 미부과

-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준)을 부담하므로 전국민 기초보험료 성격의 재원을 부담하게 됨
 - 공단의 별도 고지행위 없이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하여 공단에 이관

Ⅲ. 개선방안

- 2012년 1월 기준으로 전체 21,161천세대 중 소득 무자료 세대는 4,305천세대(20.3%) 임
 - 양도·상속·증여소득 및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자료를 확보하여 보험료 부과시 소득 무자료세대는 크게 감소할 것임
 - 향후 국세청의 카드사용 권장,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시행 등으로 무자료 세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소득 무자료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직접 부과하는 보험료는 면제 하고, 소비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 연대성의 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7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시, 직장가입자 추가부담 여부

- 소득중심의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임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의료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가입자로 포함시켜 통합 관리하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가 확대됨
 - 소득이 많은 자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며, 근로소득(보수월액)만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음
 - 직장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보수월액)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의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됨
 - ✓ 전체 직장가입자 중 약 13.3%인 1,765천명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을 보유하고 있음

Ⅲ. 개선방안

- 또한, 사회연대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재의 경제·사회구조 하에서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너무 빈번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진수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2010)
 - ✓ '08년부터 '11년까지 4년 동안 전체 21,161천 세대 중, 46.2%에 해당하는 9,769천 세대가 자격변동 됨 ('11년 직장, 지역,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등 변동 : 5,836만건)
- **가입자의 한 개인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젊고 건강한 청·장년기에는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노년기에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 어느 집단의 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가를 비교하는 것은 단순한 횡적 비교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사회연대성과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임

8 보험료 부과 및 고지 방법

● 개인단위 산정 후 세대단위 합산 부과·고지

- 모든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에 대하여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세대단위로 합산 부과·고지
 - 본인이 원할 경우 가구단위 합산 부과 또는 별도 부과 허용 가능
- 다만,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 보험료는, 개인별 산정 후 사업장 단위로 합산 부과·고지하여 원천 징수하고,
-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은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이관
 - ※ 보수외 소득 중 양도·상속·증여소득 보험료는 국세청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이관하는 방안 병행 검토

9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급여비용을 국고에서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보험 가입자로 포함시켜, 전국민을 건강보험가입자로 관리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차별 받고 있다는 의식 해소 및 차상위 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사회연대성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
 - 관리효율이 증대되고 지방정부의 부담이 줄어들, 단 국고부담은 증가 예상
-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개선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를 별도 관리하는 실익이 없음
 - 의료급여 대상자('11.11월 기준) : 1,612천명(3.2%)
- 또한, 현재도 자격관리 등을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음

Ⅲ. 개선방안

-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하여야 할 국민층으로 ‘**국가책임의 원칙**’에 의한 것임
 - 또한, 의료급여 수급 적용 대상자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계층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정책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정책적 특수성이 있음
- 국고지원 방법, 기한, 규모, 기한내 미지원시 과태료 부과로 강제하는 방안 등을 관련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고지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

▶ 대만, 독일 등의 경우 저소득층 등 의료급여대상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관리



Ⅲ. 개선방안

3. 모의시험 모형 및 모의시험안

보험재정 중립상태(2012년 재정추계 기준)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총 16개 모형, 55개안의 모의시험을 실시

모의시험 모형

1	● 보험료율 5.5%(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 2.75%, 가입자 2.75%) ●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을 현행 유지
2	● 보험료율 5.5%(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 2.75%, 가입자 2.75%) ●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은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에 포함하고 담배부담금만 현행 유지
3	● 보험료율 5%(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 2.5%, 가입자 2.5%) ●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을 현행 유지
4	● 보험료율 5%(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 2.5%, 가입자 2.5%) ●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은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에 포함하고 담배부담금만 현행 유지
5	● 보험료율 5.5%(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 2.9%, 근로자 2.6%) ●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을 현행 유지
6	● 보험료율 5.5%(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 2.9%, 근로자 2.6%) ●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은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에 포함하고 담배부담금만 현행 유지

Ⅲ. 개선방안

7	● 보험료율 5%(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 2.9%, 가입자 2.1%) ●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을 현행 유지
8	● 보험료율 5%(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 2.9%, 근로자 2.1%) ●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은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에 포함하고 담배부담금만 현행 유지
9	● 보험료율 2.9%(사용자와 가입자의 보험료율 별도 적용) - 가입자는 보수월액 및 모든 소득 2.9%, 사용자 2.9% ●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을 현행 유지
10	● 보험료율 2.9%(사용자와 가입자의 보험료율 별도 적용), - 가입자는 보수월액 및 모든 소득 2.9%, 사용자 2.9% ●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은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에 포함하고 담배부담금만 현행 유지
11	● 보험료율 4.35%(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 2.175%, 근로자 2.175%) ●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을 현행 유지

Ⅲ. 개선방안

모의시험 55개안

모의운영 모형	운영안(개)
계	55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고지원금 등 현행유지 또는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에 포함하는 방안	11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국고지원금 등 현행유지 또는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에 포함하는 방안	11
상·하한선 적용시 보수월액과 보수외소득을 합산 또는 별도 적용하는 방안	22
- 기본보험료 도입방안 - 세대당 또는 1인당 기본보험료	11

모의시험안 중 모형선정

- 모의시험 모형에 따른 모의시험안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및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보험료율은 5.5%,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과세표준에 0.51%p, 국고지원금·담배부담금·의료급여비 국고 부담금 등은 현행유지(안)이 국민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타남

그 결과

※ 보험료율 5.5% 적용은 제도도입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결정의 한 예시이므로 (경향성이 비슷함), 유사한 보험료율 채택이 가능할 것임

Ⅲ. 개선방안

4. 모의시험 결과

- '12년 재정 46조 5,334억원(추계) 중 소득보험료 부과액은 32조 6,537억원으로, 전체보험료 부과액 35조 5,758억원 보다 2조 9,221억원 감소하며, 이를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으로 확보
 -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을 부과할 경우 **현행 소비세율을 약 0.51%p (장기요양보험료 0.03%p 별도) 인상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현행 10% → 10.51%),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경우 각 품목별 세율 0.51%p인상

Ⅲ. 개선방안

- 보수월액 보험료는 75.3%인 26조 8,004억원이고,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16.5%인 5조 8,533억원임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28조 2,592억원에서 26조 8,004억원으로 1조 4,588억원 감소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5조 8,533억원 중 종합소득 보험료는 65.1%인 3조 8,101억원이며, 양도·상속·증여 보험료가 34.9%인 2조 432억원 임
 - 종합소득 보험료 3조 8,101억원 중 지역가입자가 53.1%인 2조 224억, 직장가입자가 27.8%인 1조 577억, 피부양자가 19.2%인 7,300억원임

Ⅲ. 개선방안

부과체계 개선 후 부과금액 현황, 2012년

현 행(2012년 추계)	개선 방안(보험료율 5.5%)
총 재정(①+②+③) : 46조 5,334억	총재정(①+②+③) : 46조 5,334억(100%)
① 보험료 : 35조 5,758억	① 보험료(a+b+c+d+e) : 35조 5,758억(76.5%)
- 직장보험료 : 28조 2,592억 - 사용자 부담금 : 14조 1,015억 - 가입자 부담금 : 14조 1,577억	- 보수월액 보험료(a) : 26조 8,004억(57.6%) (▲1조 4,588억) ➤ 사용자 : 13조 3,721억 ➤ 가입자 : 13조 4,283억
지역보험료 : 7조 3,166억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b) : 5조 8,533억(12.6%) (▲1조 4,633억) ➤ 지역가입자 : 2조 224억 ➤ 직장가입자 : 1조 577억 ➤ 피부양자 : 7,300억 - 양도·상속·증여 보험료 : 2조 432억
	- 부가가치세 자원(c) : 2조 5,153억(5.4%) - 개별소비세 자원(d) : 2,594억(0.6%) - 주세 자원(e) : 1,474억(0.3%) } (6.3%)

Ⅲ. 개선방안

현 행(2012년 추계)	개선 방안(보험료를 5.5%)
② 국고 지원금 : 5조 5,610억 • 보험재정 국고지원금 : 4조 3,434억 • 담배부담금 : 1조 630억 • 차상위 지원금 : 1,546억	② 국고 지원금 : 5조 5,610억(11.9%) • 현행과 동일
③ 의료급여(조세 : 국고+지방비) : 5조 3,966억	③ 의료급여(조세:국고+지방비) : 현행과 동일(11.6%) : 5조 3,966억
장기요양 보험료 : 2조 3,302억	장기요양 보험료 : 2조 3,302억 . 보수월액장기요양 : 1조 7,554억 . 보수외소득월액 장기요양 : 3,834억 . 소비세 장기요양 : 1,914억

※ 현행(2012년)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비는 **2012년도 추계치**임

※ 보수외 소득월액은 2012년 1월 보험료 부과자료(2010년 귀속분) 기준, 양도소득은 2010년 1/4분기, 상속·증여는 2008년 귀속 자료와 2011년 국세청 통계연보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

※ 부가가치세는 2011년 국세청 통계연보 기준이며, 양도·상속·증여는 과세표준액 기준 추계함

Ⅲ. 개선방안

● 보험료 부담의 변화

보험료 인상·인하 현황

근로소득(보수월액)만 있는 세대
대부분 인하

실직자, 노인, 농·어민, 영세자영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 대부분(97.9%)이 인하

(단위 : 천세대, %)

구 분	계(21,161)			직 장(13,261)			지 역(7,900)		
	인 상	인 하	무변동	인 상	인 하	무변동	인 상	인 하	무변동
세대수	1,538	19,623	0.445	1,369	11,892	0.438	169	7,731	0.007
비율	7.3	92.7	0	10.3	89.7	0	2.1	97.9	0

※ 피부양자 중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는 190만 세대(214만명) 및 양도·상속·종여 소득 보유자 645천명은 인상·인하 세대 현황에서는 제외되었음. 모든 세대가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상 19.3%, 인하 73.4%

• 세대는 직장·지역 증번호 기준임

- 소득 분위별 변화 ... 소득수준을 1(저소득)~ 20(고소득)분위로 구분

- 소득하위 20%(1~4분위)는 부담 감소 ...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만 부담
- 소득상위 5%(20분위)는 부담 증가
- 나머지 5~19분위는 현재보다 보험료를 적게 부담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됨

Ⅲ. 개선방안

보험료 인상·인하 세대 사례

사 례	현 행	개 선
① 소득은 없고 재산(전월세)만 있는 지역가입자	13,770원	소비로 간접납부
② 소득은 없고 주택만 있는 노인(69세) 세대	150,280원	소비로 간접납부
③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331,330원	639,420원
④ 보수월액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175,000원	2,857,800원
⑤ 소득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	336,920원

Ⅲ. 개선방안

4. 기대효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도모

-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재정의 주수입원인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가능 하도록 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 획기적 제고

-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함으로써,
-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크게 향상시킴

※ 향후, 연금 수급자 확대·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향 등 소득기반 확충 예상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수용성 향상

- 실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 해소
-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 과다로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세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세대 등의 만성적인 불만 해소
- 보험료 부과체계의 단순화로 가입자의 이해 및 수용성 제고

사회연대성 강화

- 의료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이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 소비(부가가치세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국민 모두가 보험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크게 강화시킴

인력의 효율적 운영

- 부과체계의 단순화 등 업무효율화로 발생할 절감인력은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필요한 예방, 검진·증진,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으로 대체하고,
- 연말정산 제도 폐지에 따라 보수월액 적정신고여부 확인 등 사업장관리업무 강화에 투입하는 등 효율적 인력운영 가능



- ✚ 본 부과체계 개선안은 그동안의 연구용역 내용을 분석한 결과와, 외국의 사례, 현장실무 경험 및 토론과정을 거쳐 마련된 공단 실무안임
-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과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 ▶ 현재 한국재정학회, 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음('12.4~10월)
- ✚ 10월 이후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단 실무안과 비교·분석한 뒤 공평성, 실현 가능성, 수용성 등이 높은 방안을 선정, 제안할 예정임

h·well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 기관

감사합니다

